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9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58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장

2.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구합2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6,385,630원, 농어촌특별세 38,319,260원, 지방교육세 71,277,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피고 [redacted]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9

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12. 취득세 764,437,360원, 농어촌특별세 76,443,710원 및 2014. 1. 28. 취득세 391,519,450원, 농어촌특별세 39,15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2011. 11. 27.'을 '2007. 11. 2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구 지방세법 제110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6행 및 제10쪽 제12행의 각 '지방세법'을 각 '구 지방세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6-29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채 정 선

판사 박 정 대